

〈표 2〉 노인의 사망 외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률 추이(2011-2012)

(단위: 인구 10만명당)

연령	2011	2012	사망의 외인						
			교통 사고	추락 사고	익사 사고	화재 사고	중독 사고	자살	타살
60-69세	112.1	101.2	25.5	9.2	2.5	1.0	1.0	42.4	1.2
70-79세	209.5	198.8	47.4	16.0	3.4	1.8	2.0	73.1	1.3
80세이상	423.3	437.8	48.3	34.1	4.8	2.9	2.3	104.5	1.8
계	744.9	737.8	121.1	59.3	10.7	5.7	5.3	220	4.3

출처: 통계청, 2013: 19(사망원인통계연보)

이처럼 사고로 인한 노인들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것이 자살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노인들이 살아가기에 현재 우리사회의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인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에 의한 사망은 60대의 경우 42.4명이며 70대는 73.1명 그리고 80세 이상은 104.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60대 보다는 70대가, 70대 보다는 80세 이상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자살에 의한 사망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사망원인이 교통사고이다. 이는 노인들이 신체능력의 저하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인 보행자의 경우 시력의 저하로 교통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보행속도의 저하로 횡단보도 등에서 사고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노인안전 관리의 필요성

노인안전은 우리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의 발전과 의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80세가 넘어가고 있다. 즉, 노인이라도 20년 이상의 삶이 더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의무인 것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노인을 피해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죄도 또한 늘어나고 있다. 사고와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노인들의 수도 증가를 하고 있다. 그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노화를 겪고 노인이 된다. 노인안

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이 문제는 언젠가 모두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문제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중간층 소득의 채 절반도 못버는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의 43%에서 2013년에는 48%까지 상승했다.⁵⁾ 그리고 노인들의 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이다. 2013년 기준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64명이고 80세 이상의 자살률은 95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의 불씨를 안고 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노인안전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Ⅲ. 노인안전을 위한 경찰활동

1. 사회약자를 위한 경찰활동

사회약자를 위한 경찰의 활동으로는 권력적·비권력적 경찰활동이 있으나, 경찰행정상 법집행활동은 주로 권력적 경찰활동이 주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행정에서는 경찰개념을 단순히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만을 그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봉사행정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단속분야는 현재 법집행활동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단지 보이스포싱과 건강식품 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경찰단속권을 행사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찰법집행활동은 충분하지는 않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 청소년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특히 보호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집행에서는 특별히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김원중, 2013: 334-335).

5) <http://news.itbc.joins.com/html/805/NB10595805.html?cloc=joongang%7Carticle%7Ctodayhot> 2014.10.02 검색

6) <http://news1.kr/articles/?1886502> 2014.10.02 검색

또한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제도를 도입해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 관계 당국에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노인복지법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까닭에 신고의무제도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유지웅, 2011: 100-103).

한편 경찰은 2006년에 ‘경찰방문 및 방법진단규칙’을 개정하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경찰관의 기본근무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독거노인 보호활동은 노인 학대 피해자 조기발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유지웅, 2011: 108-109).

하지만 실제 경찰 법집행에서는 노인 문제에 대한 경찰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경우 학대를 당한다고 해도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 학대의 가해자가 대부분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신체적인 능력저하와 은퇴로 인한 경제적인 능력의 약화 때문에 범죄를 당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범죄피해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경찰의 실질적인 노력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

2.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활동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법집행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도로교통법」 제11조 제5항 제4호에는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은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의 2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정에 의해 시장은 노인 보호구역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인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권자는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정하고 있어 이원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교통안전을 위해 경찰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

고 있으며,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후 야광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교육은 경찰의 지역사회경찰활동과 함께 경찰의 비권력적 작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경찰활동 중 노인안전에 대해서는 노인교통안전교육과 홍보 등 비권력적 작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권력적 경찰작용인 경찰하명은 노인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안전시설물 설치에 한정되고 있다(경찰청, 2012: 190).

3.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보호 경찰활동

사회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여성 등에 대해서는 경찰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등하교 학교주변 순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주변 순찰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인에 대한 경찰방문은 특별히 경찰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비권력적 경찰작용인 경찰방문은 순수 자유재량행위로 공권력이 발동되지 않고 있어 경찰방문에 관해 노인은 적극적인 요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노인안전에 관해 경찰방문은 비권력적 작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 가능하며, 경찰은 널리 경찰방문을 집행할 수 있으나 현재는 그 방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경찰재량에 맡기고 있어 집행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원중, 2013: 336-33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지방경찰청의 경우 지휘부의 높은 관심 속에 도내 노인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실종, 자살, 고독사, 범죄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효 나눔 치안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이러한 효 나눔 치안활동은 112순찰근무 중 홀몸 어르신과 말벗이 되어주는 서비스로, 순찰 중에 안부를 묻는 '112 말벗 서비스'와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 등의 신청을 받아 홀몸어르신 가구를 경찰관이 방문, 안전을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해 주는 '홀몸어르신 안전 확인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경찰관·출향인사·협력단체원 등이 지역 내 거주하는 홀몸어르신과 1:1 결연을 맺고 수시로 전화 또는 방문하는 봉사활동인 '홀몸어르신 사랑 잇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충북경찰에서도 부모님을 자주 찾지 못하는 자녀를 대신해 홀몸 어르신을 찾아 안전 확인 등을 펼치는 '실버 케어' 활동을 펼쳤다. 또 홀몸노인의 전화가 두절될 경우 자녀 또는 친인척이 경찰에 신고하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확인 후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치매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은 독거·치매 노인의 안전을 위해 지구대(파출소)팀별 밀착형 독거노인 보호활동 및 CCTV 등 인프라 확대, 치매 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등 지역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⁷⁾ 부산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방청에 치매노인 실종팀을 신설하고 전 경찰서에 치매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위험군 가출(실종) 전력자를 특별 관리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기술이 적용된 배회감지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⁸⁾

하지만 이러한 노인대상 치안활동이 경찰 전체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에서 재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경찰청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노인안전을 위한 경찰활동의 문제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안전 관련 경찰활동들은 모두 노인안전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사고예방활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경찰 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노인안전을 위한 경찰활동은 적극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넘어 가는 분들이 많으며 자식에게 학대를 받아도 쉽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들은 외부로의 활동이 드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야 할 때도 많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더 적극적인 경찰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경찰의 노인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곳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제도로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아동 보호구역과는 달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많은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네비게이션에서도 아동 보호구역에 대한 안내가 나오지만 노인 보호구역은 나오지 않는다.

7) <http://www.idaegu.co.kr/news.php?mode=view&num=125973> 2014.04.15. 검색

8) http://www.bspolice.go.kr/02_police25/sub03_01.asp?type=17&idx=89921&bmv=view 2014.04.15. 검색

그리고 노인안전에 대한 경찰활동은 각 지방청이나 경찰서 지휘부의 생각이나 의도에 따라 정책과 활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휘부가 노인문제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그 활동에 제약이 있다. 또한 노인안전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노인안전에 관한 문제는 각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에 맡기기 보다는 경찰청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노인안전을 위한 경찰의 활동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600만명을 넘어 섰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안전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IV. 노인안전을 위한 경찰활동의 제언

1. 노인대상 범죄예방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체 범죄피해자 중 노인 범죄 피해자의 수가 10%에 육박할 정도로 노인의 범죄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기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와 교육이다. 방송을 이용하거나 직접적으로 노인들이 모여 있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다단계에 관한 사례와 예방법을 홍보하거나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불량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불법다단계업자들이 찾아 왔을 시에 신고를 한 노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과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판단력과 분별력이 약한 점을 노려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농촌의 주거시설이 도심에 비해 문단속 장치 등이 취약하여 이를 노리는 농촌지역 대상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법용 CCTV 등의 방법시설을 차량이 진입하는 마을 입구

나 마을 중심에 설치하고, 경찰은 주거시설의 출입문에 대한 시건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취약지역 순찰 등의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농촌지역 독거노인 주택 등을 중심으로 주민 접촉형 순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노인 학대에 관해서는 대부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경찰은 협력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노인 학대 또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주체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 및 신변안전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현장 동행 의무화를 추진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장과 수사기관장에게 상호 현장 동행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대피해노인을 가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2. 자살예방 대책

노인 안전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살로서 교통사고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자살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노인 10만 명당 자살자의 수는 OECD 국가들의 전체 평균의 2배를 넘기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의 자살이 상당수 생활고, 질병, 가족불화 등 노인이 당면한 생활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살의 배후에 있는 노인문제가 무엇인가를 진단하여 사회적 조건의 개선, 즉 일차적 예방대책으로서의 노인 복지적 대응이 우선적으로 요구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Maltsberger(1991)는 자살방지는 일차적, 이차적 그리고 삼차적 수준에서 각각 행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차적 자살방지란 사회적 조건의 개선을 통해 자살의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말하고, 이차적 자살방지란 자살을 고려하기 시작하였거나 혹은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자들을 파악한 후 자살과정에 개입하여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삼차적 자살방지는 자살시도자와 같이 만성적인 자살위험에 처해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살로 인한 손상과 자살확률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이희완·유현숙, 2011: 16).

하지만 경찰의 역할로는 일차적인 예방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차적 자살방지를 통해 자살고위험군의 자살과정에 개입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자살 고위험군 관리체계구축에 경찰이 연계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를 받아 지역사회를 순찰하면서 대상자를 수시로 방문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방지하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미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2003년 당시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이 40.1명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12년의 자살사망률은 31.1명으로 20% 이상 감소하였다. 2007년부터 1차 자살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12년부터는 5년간 2차 자살종합대책의 수립으로 매년 3,300억 규모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다(정진욱, 2013: 1). 이렇듯 자살 예방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우리나라 또한 자살을 방지하는 데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

3. 교통사고 대책

노인 안전사고 사망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의 50%가 보행 중 발생하여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사고 비율인 38%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노인 운전면허 보유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⁹⁾

노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보호구역 및 생활도로구역 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기 때문에 지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노인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노인 보호구역을 선정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도로에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정비 등을 통해 보행자 우선인 교통안전 시설로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 운전자가 늘면서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노인들에 대한 운전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9) http://m.mospa.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9vDdsJcHa3HGvQRUAMiqA3f3osFDDOoeBGhNPw91kKHtttMT2Aj5riR12k3pyKtJ.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48&nttlId=32012 2014.04.10. 검색

한 노인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의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

4. 경찰 내 노인안전업무 담당조직 신설의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전체 인구의 12%에 이르는 수준이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노인안전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 청소년, 여성보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와 지방경찰청, 경찰서 단위에 여성청소년과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단위에 노인안전 관련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안을 더 늦기 전에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안전문제에 대해 경찰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어 미래의 노인문제 관련 치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경찰 주도의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은 사회복지적인 분야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대부분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복지적인 측면과 함께 경찰의 법집행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노인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적인 접근과 함께 경찰활동이 작용하는 체계가 적합할 것이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활동하는 것이 바로 경찰이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한 조직으로서 경찰은 노인안전을 직접적으로 챙기는데 있어서 적임이다.

하지만 노인안전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경찰만으로 노인안전을 모두 책임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부조직이나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노인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지역사회에서도 나름대로 노인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노인안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따로 노인안전에 대한 정책이나 목표를 실행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고 나머지 기관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이 주도적으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노인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어르신 안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노인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학대, 물품·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을 보호하며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공유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장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대한노인회의 협력처럼 지역별로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노인안전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취약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며 민간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범죄피해 조기발견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는 등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노인안전 강화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V. 결 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살아갈 날은 많아졌으나 오히려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있어 노인들은 은퇴 후에 20-30년을 아무 일이 없이 보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노인들은 신체적·심리적 퇴화로 인한 기능의 저하들로 노인 학대와 같은 피해를 입는 일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에 취약한 대상이 되어 범죄피해를 입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와 반대로 경제적 이유나 노인 특유의 성격적 특징으로 인해 노인들이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자살사고는 질병을 제외하고 노인들의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신체적, 심리적 이유와 사회적인 고립에 따른 우울 성향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삶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또한 노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사고로 대부분 보행 중에 신체적 능력의 저하나 판단능력의 감소로 빠르게 반응하지 못해 당하는 사고가 많다. 치매노인들의 실종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 노인관련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노인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 문제들 또한 점점 더 사회적인 문제들로서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앞으로 경찰은 노인안전을 위한 순찰과 방문활동 등을 통한 범죄조기발견과 범죄예방,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경찰의 안전지도 등을 통해 노인의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대상의 치안활동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의 노인안전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 학대와 같은 사건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노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노인자살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안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기관 단독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러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노인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제고를 위해서 노인안전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안전과 범죄피해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노인안전의 중요성 제고 등을 통해 노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곽대경. (2011),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3: 11-36.
- . (2012), “노인범죄피해와 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한국경찰연구」, 11(2): 35-60.
- 김상균·이승철. (2010),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 김성진. (2009), 「범죄심리학」, 동인.
- 김원중. (2013), “한국에서의 노인안전을 위한 경찰의 역할 정립 방안”, 「유럽헌법연구」, 13: 321-346.
- 김흥진·김홍순. (2004), “노인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17(3): 139-163.
- 김희연 외. (2013), “한국노인의 시중고, 원인과 대책”, 「이슈&진단」, 120, 경기개발연구원.
- 대검찰청. (2009-2013), 「범죄분석」, 대검찰청.
- 박기범. (2011), “노인대상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프로그램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4): 23-36.
- 유지웅. (2011), “노인학대 조기발견 대책과 경찰의 역할”, 「치안정책연구」, 25(1): 87-114.
- 유학수. (2012), “고령화 시대의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교정복지연구」, 25: 51-71.
- 이인수. (2003), 「노인복지론」, 양서원.
- 이혜원. (1999),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동인.
- 이희완·유현숙. (2011), “노인자살 예방대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2): 7~28.
- 정진욱. 2013, “일본의 자살현황과 대책”, 보건복지 Issue & Focus, 207: 1-8.
- 통계청. (2013),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 한동효. (2008),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12(2): 87-109.
- 허영. (2009), 「한국헌법론」, 박영사.

2. 기타자료

한국경제 2013.11.21. 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12116211>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03529&cid=2891&categoryId=2891> 대구신문

2014.03.27. 기사

<http://www.idaegu.co.kr/news.php?mode=view&num=125973>

JTBC 뉴스 2014.10.02 기사

<http://news.jtbc.joins.com/html/805/NB10595805.html?cloc=joongang%7Carticle%7Ctodayhot>

뉴스원 뉴스 2014.10.02 기사

<http://news1.kr/articles/?1886502>

부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bspolice.go.kr/02_police25/sub03_01.asp?type=17&idx=89921&bmw=view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m.mospa.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9vDdsJcHa3>

HGVQRUAMiqA3f3osFDDOoeBGhNPw91kKHtttMT2Aj5riR12k3pyKtj.mopwas51_s
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48&nttId=32012

경향 비즈앤라이프 2014.12.18. 기사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2182237235&code=920100&med=khan

2014.12.18. 검색

【Abstract】

Role of Police for Enhancement of Elderly Safety

Cha, Min-Kyu
Kwack, Dae-Gyung

South Korea already became an aging society, and is now in the process of becoming an aged society. With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elderly safety issues such as traffic accidents and elderly suicides are becoming important problems. Elderly victimization are increasing, and elderly safety accident is also becoming an important social problem.

The police is doing various activities for elderly safety. The police is conducting programs for the elderly, such as a prevention program for fraud against elderly, and safety checks and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preventing elderly traffic accidents. Also, there's a program of providing regular visits for a lone elderly, expansion of CCTV network and fingerprint registration to prevent elderlies with Alzheimer's disease going missing. However, these programs are not done on a national scale, but rather limited to local police s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police roles for enhancing elderly safety, due to lack of police activity in this area. Recommendation for police roles in enhancing elderly safety is to first conduct routine crackdowns on fraud against elderly and also conduct education programs for preventing fraud. Also, crimes such as elderly abuse is lead by elderly protection agencies, but considering elderly abuse is a crime, the police should take a leading role. Also, to prevent elderly suicide, meticulous management of elderlies with high suicide risk is necessary, and elderly protection areas should be designated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Also, elderlies should be induced to turn in their driver's license. To conduct these matters of elderly safety, an organization exclusively charged with elderly safety is necessary.

Elderly safety is a broad concept, and since police alone cannot handle the task of ensuring elderly safety, the police should take on a leading role in cooperative efforts with various institutions of the government,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for elderly safety.

Key words : elderly safety, elderly crime victimization, elderly abuse,
police patrol, social safety net